

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

-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국과정에서 생체정보 등이 수집된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장·국회의장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
- 청구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
 - 법무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장이 2019. 4. 30.부터 2021. 10.경까지 추진한 <인공지능 안면인식 개발 사업> 과정에서 내국인 5,760만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건의 생체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가공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처리행위가 법률유보원칙, 적법절차의 원칙,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행정작용으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음
 - 또한,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만약 위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법률상 근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, 과잉금지원칙,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위배한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음
 - 끝으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목적 생체정보활용에 대한 금지 또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또는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, 안면인식 등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유예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음

□ 청구인 : 국민 1인, 외국인 1인

□ 피청구인 : 법무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장, 국회의장

□ 사건의 개요

- 법무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장은 2019. 4. 30.경부터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수집·보유한 안면데이터 및 이상행동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는 인공지능(AI)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음
- 피청구인들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개발 사업을 위해 2019. 4. 30.경부터 2021. 10.경까지 24곳의 기업에게 내국인 5,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건의 생체정보 및

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청구인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. 4. 27.자 보도를 통해서 피청구인들이 ‘인공지능(AI)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’을 통해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인식하였음

□ 심판의 대상(기본권 침해의 원인)

- (이 사건 개인정보처리 행위) 피청구인 법무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장이 안면(얼굴) 자동인식/추적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(AI)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청구인들의 안면(얼굴) 이미지정보 등 생체정보와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민간기업들에게 접근과 활용을 허용하고 청구인들의 안면(얼굴) 이미지정보 등 생체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행위
- (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)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5항, 제6조 제6항, 제12조의2 제5항 및 제28조 제6항
- (입법부작위)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청구인들의 안면(얼굴) 이미지정보 등 생체정보 및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
- (행정부작위) 피청구인 법무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장이 청구인들의 안면(얼굴) 이미지정보 등 생체정보 및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

□ 청구의 주요 내용

- 심판대상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
 -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인간의 존엄성, 행복추구권
-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 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
 - ① 법률유보원칙 위배
 -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

- 참고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률상 근거라 주장하지만,
-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“출국심사에” 또는 “입국심사에”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,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률상 근거로 보기 어려움

②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

-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고지 또는 의견 수렴 등의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절차적 요청 이행 없이 이루어진 기본권 제한 행위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

③ 과잉금지원칙 위배

-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,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음. 따라서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
- (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)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라는 목적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정부 보유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려는 목적은 공익이라고 볼 수 없고, 오히려 공익을 해하는 목적임.
- (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음) 정보주체의 보호 관점에서 절차가 없어 현저히 불합리하고, 사인에 의한 안면인식개발에 치우친 행정작용으로 공정성을 갖춘 것이 아님
- (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없음)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, 안면인식 외에 기술 개발을 통해 출입국 심사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을 채택한 것이 아님
- (법익의 균형성) 달성되는 공익은 불투명하거나 없고, 달성되는 사익은 법률상 이익에 불과한 반면,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헌법적 이익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음

○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

① 명확성의 원칙 위배

- 피청구인들의 해석과 같이 “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에 생체정보를 활용”을

“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와 관련된 사업 일체에서의 생체정보 활용”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

- 개인정보 보호법이 민감정보의 처리의 예외로 달는 법률에서의 규율을 요구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자, 생체정보 활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또는 불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임
- 정보주체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생체정보가 어느 범위까지,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통해 예측할 수 없게 됨

② 과잉금지원칙 위배

-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,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음. 따라서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

③ 보호의무 위반

-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광범위한 생체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, 침해요인 검토, 동의 및 정보주체의 의견 청취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, 헌법 제10조 등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

○ 이 사건 입법 및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

-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등 국제인권조약은 정보주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,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안면인식 인공지능 등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입법적 및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음

*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기에서 발표한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통해 원격 실시간 얼굴 인식과 같은 잠재적인 고위험 기술의 경우 그 사용의 인권준수가 보장될 때까지 사용유예를 권고한 바 있음

- 위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에 비추어 보았을 때, 피청구인들은 법률의 제정 또는 행정작용으로써 이 사건 개인정보 처리행위와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 생체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거나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함,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은 침해되었음